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재정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중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2. 영 제3조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영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

제3조(재정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낡은 차량의 대체
 3.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및 교통카드 사업 등
 5.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중교통 요금할인
 6. 무료환승 할인, 교통카드 할인 및 카드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
5. 알뜰교통카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

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
2.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

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등”이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

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

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 지원 비용 발생(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세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도비
- 세출(2023년도 기준) : 18,331백만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1,612백만원
 -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 1,065백만원
 -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 10,000백만원
 -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 255백만원
 - 도시공공형 버스 지원 : 400백만원
 - 교통카드 관련 지원 : 4,579백만원
 - 공항버스 결손 지원 : 180백만원
 - 공영버스 구입 지원 : 240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624	645	634	645	664	3,212
도 비	799	1,114	1,399	1,486	1,530	6,328
시 비	16,908	16,626	19,754	20,546	21,235	95,069
합 계	18,331	18,385	21,787	22,677	23,429	104,609

5. 부대의견

-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시행으로 매년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6. 작성자 : 대중교통과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 김정록(480-2927)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입 안 자	과 장	김 태 영
	팀 장	전 종 훈
	담 당 자	김 정 록 (480-2927)